

품질인증 콩나물 생산업체 시설·장비 확보기준 통보

- 국립농산물 검사소 -

품질 51160-123('98. 2. 23)호에 따라 품질인증품 생산업체의 시설·장비 확보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콩나물 품질인증품 생산시설·장비확보기준을 정하여 협회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사단법인대한두채협회 산하 품질인증업체는 확실히 확인하시고 기준에 미달된 업체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타 생산자들도 품질인증을 신청할 시 많은 도움이 될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콩나물 품질인증품 생산 시설·장비 확보기준

구 분		최 소 기 준
재배사	면 적	40평 이상
	구 조	판 널조 이상
	단열재	두께 75mm 이상
원료보관창고		5℃이하 유지가 가능한 냉장시설의 확보
원료콩선별시설		원료선별기 또는 비중선을 할 수 있는 용기 확보
세척시설	원료콩	세척기 또는 비중선을 할 수 있는 용기 확보
	콩나물	세척기, 스텐레스세척통, 작업장 중 한가지 확보
살수시설		자동살수기, 강하침지식 재배용기, 살수기가 부착된 재배용기 중 한가지 확보
재배사온도조절시설		재배사의 자동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 확보
살균시설		오존발생기 또는 자외선 살균시설 등 확보
불림통, 재배상자		1일 생산목표량에 지장이 없는 수량을 확보
작업대		위생관리가 가능한 스텐레스 작업대 확보
운송차량		냉장탑차 1대이상 확보
양수시설		1일 소요용수량 확보에 지장이 없는 양수기 확보
계량기		첫달림 5g단위이하로써 1일 생산량 작업에 지장이 없는 대수를 확보

1998년 5월 19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33호)이 공포되어 개발구역내에 1천제곱미터이하의 콩나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해당회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령

◎건설교통부령 제133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령
1998년 5월 19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 제목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을 "(도시계획으로 설치할 제2호종 "서동복합시장"을 "복합시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종 "농수시도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 제2호종 "서동복합시장"을 "복합시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종 "농수시도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 제2호종 "서동복합시장"을 "복합시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종 "농수시도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 제2호종 "서동복합시장"을 "복합시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종 "농수시도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목(다목은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1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하며, 동일한 주택안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가구로 하며, 각목(3)의 경우에는 기합에 한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사 또는 콩나물재배시설

(1) 1가구당 기준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이하의 옥사 또는 1천제곱미터이하의 콩나물재배시설

(2) (1)의 옥사 또는 콩나물재배시설에 설치하는 10제곱미터이하의 옥사 또는 콩나물재배시설

(3) 파수원, 초지 등의 관리용건축물의 인근에 설치하는 1가구당 10제곱미터이하의 옥사

(4) 옥사 또는 콩나물재배시설을 다용과 같이 하고, 동목에 (4) 및 (5)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파수원, 초지 등의 관리용건축물의 인근에 설치하는 1가구당 10제곱미터이하의 옥사

(6) 옥사 또는 콩나물재배시설을 다용과 같이 하고, 동목에 (4) 및 (5)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파수원, 초지 등의 관리용건축물의 인근에 설치하는 1가구당 10제곱미터이하의 옥사

(8) 옥사 또는 콩나물재배시설을 다용과 같이 하고, 동목에 (4) 및 (5)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철거된 후 2년 이내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축제한기간을 폐지해 철거된 후 언제든지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대통령령 19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

-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1가구당(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 1천㎡ 이하의 축사 설치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축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각 10㎡ 이하의 관리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서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는 기존 주택을 3층 이하 연면적 300㎡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증축해 기혼자녀의 분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발제한구역 안의 시 군 구에 국·공립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국·공립고등학교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사립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특수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

- 종전에는 주택이축 시 이축 대상지를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마을 안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성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이축 대상지를 해당 시 군 구 또는 인접의 시 군 구까지로 확대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나 그 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서 교육청 세무서 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등 지역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폐교된 학교시설을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 또는 물품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나 그 구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소재한 토지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나대지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 병원 의원 조산소 등 의료시설, 생필품 슈퍼마켓과 은행 등 금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동일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인접대지와 합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의 경우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도록 하고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건설부 19일]